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8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김승남・이인영・최종윤

인재근 · 김민기 · 박완주

이개호 · 김홍걸 · 안민석

김남국 · 문진석 · 윤미향

김원이 · 기동민 · 서동용

윤재감 · 김회재 · 송갑석

위성곤 • 이상직 • 김진표

허 영·소병철·윤영덕

홍익표 · 김민석 · 이상민

김경협 의원(2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음.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함.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꾸준히늘어나는 추세임. 이번에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지역은 경기도 여주시,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무안군, 나주시 등이 대거 포함됨. 이미 전남 고흥군, 신안군과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이미 2017년도부터 비수도권 전체의 GRDP를 초과하기 시작했음. 반면 비수도권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까지 더해져 인구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 함으로써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방소 멸위기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시 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지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율, 연령대별 인구구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 조).

- 마.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
-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년일자리를 지원함(안 제16조).
- (2) 지역활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 및 보조금지원,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강화하여 다른 지역보다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더 큰 폭으로 감면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조세특례, 토지수용 및 민간투자활성화 등에 대한 특례, 비농업인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21조까지).
- (4)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우대시책을 강구하고, 활성화 구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5)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종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5)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안전·편의시설, 교통, 문화, 교육, 보육, 의료 분야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안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보조금 지원비율 및 국비 보조비율을 우대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이란 자연적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2.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국민으로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국민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이 법에 따른 정책을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제활동인구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확대할 수 있되,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과 국가의 재정지원 그 밖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과 관련된 경우에는 원래의 범위로한다.
- 3. "청년"이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 중 만 15세 이상 만 39 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지역활력"이란 특정 지역이 갖는 내재적 역량으로서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공간적 환경에서 해당 지역에 항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비율에 상응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시책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며, 전국적 규모에서 추진하여야 할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적합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방소멸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을 지원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인구 및 경제 활동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사항과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은 그 다른 법률로 정한 사항과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이 함께 적용되거나 유리한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인구 확보 기본계획 또는 중앙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소멸위기지역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 제6조(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시 및 군을 말하며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그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은 각각 5년 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방지지방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그 기초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읍·면·동의 자치조직 또는 지역 공동체, 지역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변화 추이 및 인구증감 현황에 관한 사항
- 2.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억제에 관한 사항
- 3. 해당 지역의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 4. 해당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문화·복지·주거·의료·환경 등 지역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지역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여건 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지역활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지역생활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5. 소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배분에 관한 사항
- 6.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할 경제활동인구의 범위 조정 및 조정이 각 시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7.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 등 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의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를 기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여 참고하게 할 수 있다.
- 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본계획을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상급 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내용 및 성과를 해마다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⑧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제출 및 주민의견 청취와 기본계획의 제출,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및 제시,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제출,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의 활용 및 제7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에서는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 누락된 사항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 3.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배분에 관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에 대한 최대한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중복이나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절차, 제5항에 따른 통보절차,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장래 인구를 추계하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과 관련된 지역정보와 통계의 생산 및 활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해당 지방자기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수립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의 심 의와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통보·조정 및 점검절차, 제4항의 평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원활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인구문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⑤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구확보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 ⑥ 중앙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등의 심의
 - 3. 인구확보 시책에 관한 연구 및 건의
 - 4.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위치한 대학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 2.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 3. 읍 면 동 지역 주민대표
- ③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위원회(제3항에 따라 기능을 대행하는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주체로서 읍·면·동단위로 지역활성화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센터 등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활성화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지방소멸방지 기획단 등)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 기획단(이하 이 조에서 "기획단"이라 한다) 등 사무기구를 둔다.
 -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리

- 제13조(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 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제1호의 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지표를 보조지표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표를 적용 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한다.
 - 1. 인구감소율
 - 2. 연령대별 인구구조
 - 3. 재정여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

용한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역
- 3. 제6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적 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조사단을 조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 또는 조사결과 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방지를 위 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해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
- ⑦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구체적 지표 등 같은 항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과 지정, 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차등적용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표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등급을 매겨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7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제1항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후단의 절차를 준용한다.
 - ③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의 평가 또는 조사 결과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차등등급의 부여, 제2항에 따른 등급의 조정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제15조(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 내의 특정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이하"활성화 구역"

-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청년의 창업 지원 및 창업 화경 조성
- 2. 혁신적 창업구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을 투자할 의사를 가진 외국 국적 청년의 이주 촉진을 위한 지원
- 3. 귀촌 귀농인 등 지원
- 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 5.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 6. 그 밖에 이 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시범사업 등
- ③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제2항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지원과 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년일자리 지원)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일자리를 확충하여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

하는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사업

- 2.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보조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임금 등 인건비와 창업비용 등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제2항에 따른 보조금신청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여성일자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17조(지역활력산업의 육성)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지역활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지역활력산업육성방안을 포함시켜 작 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역활력산업육성방안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받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지역활력산업육성방안에는 지역활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규제완화 또는 특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세특례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

라 지정된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3. 특수목적고 지정요건의 완화에 관한 사항
- 4. 보전산지 내 산지개발을 위한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 5.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초 지전용 완화 및 국유림 사용 허용에 관한 사항
- 6.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내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 7. 광고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 8.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변경,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의 시설설치,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촌관광 휴양 부대사업의 실시를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 9. 자체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제조면허 완화에 관한 사항
- 10.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완화에 관한 사항
- 11.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례, 일정기간 경과 후 농지 복구 조건의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허가의 완화에 관한 사항
- 12.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특허 출원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처리에 관한 사항
- 13. 산지관리기반시설에 대한 임도설치 및 산지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 14. 국유림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및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에 관한 사항
- 15.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법 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강화)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소멸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검증을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 발계획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역산업과 연계시켜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비용의 지원, 조 세특례의 확대,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시책과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토지수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내의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등 지역활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경기준·건폐율 또는 건축물높이제한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1조(비농업인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특례) 지방소멸위기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을 허가할수 있다.
 -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말·체험영농주 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한 후 창업 등 농업 외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제22조(국책사업의 유치) 국가는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의소재지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심사 시가점의 부여, 국가사업의 추진 시 지방비 분담비율의 축소, 공모사업의 할당제 도입 등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우대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할 때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고려하여야 한다.
- 제23조(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신속하 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된 활성화 구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4조(주거 지원 등) ①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은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기준의 별도 제정
 - 2. 공동시설이 활성화 구역의 중심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기존 유휴 시설의 조사·활용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에의 반영
 - ② 국가 및 해당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 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 면
 -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의 우선 입주권의 부여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종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 할 수 있다.
- 제25조(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안전 및 편의 생활공간의 조성)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

들의 건강, 안전,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는 이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행정서비스의 범위와 재원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조성)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한 곳에 모아 설치·운영하는 복합화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는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재원의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 경 으로 정한다.
- 제27조(교통편의의 제공 등)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하는 도로의 건설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내의 시·군 사무소 소재지와 주요 거점마을 사이의 연계도로 등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하여 유지·관리하여야하며, 국가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위

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외에 공공용 또는 맞춤형 운송수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러한 운송 수단을 통한 유상운송 및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

- 제28조(유휴시설의 활용을 위한 지원)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한 방치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폐교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 제29조(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법」 의 규정에도불구하고 단독주택에도 「도서관법」 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등록할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학예사의 운영,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30조(교육재정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에 따른 교부금을 지방소멸위기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 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행정안전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재정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특수 목적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 및 공립자율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대하여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⑥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학교에 재학중

인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초·중등교육 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 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어린이집의 확대 지정) ①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소멸위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기부채납이 나 무상임대를 받는 방식을 통하여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 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의료시스템에 대한 특례) ① 지방소멸위기지역 내에서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3조(마을 주치의 제도의 도입) ①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방문을 통하여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주치의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약의료기관에 마을 주치의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거소를 둔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걸쳐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인구 산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킬수 있다.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걸쳐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도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제5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 제35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종합 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보조금 지원비율 및 국비 보조비율 우대 적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 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④ 「기초연금법」 제25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 1항에 따른 국가 부담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의 100분의 90을 상회하여 전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부담한다.
- 제3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 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 · 관리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 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3.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 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6. 제5항에 따른 차입금
 - 7.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이 법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 2.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그 밖에 회계 운용에 관한 경비
- ⑤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 별회계에 전입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 ⑦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⑩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①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